

2026년 은풍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26. 8.



예 천 군
[기 획 예 산 실]

2026년 은풍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1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26. 07. 21. ~ 07. 24. (4일간)
- ☐ **감사범위** : 2024. 5월 이후 기관운영 전반
- ☐ **감사반** : 감사팀장 외 6명

2 감사결과

- ☐ **행정상 조치**
 - 17건(시정12, 주의5)
- ☐ **재정상 조치**
 - 5건(세입1, 회수3, 추정1)
- ☐ **신분상 조치**
 - 3명(주의1, 훈계2)

3 지적사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독촉 통지서 미발송 ⇒ 조치사항 : 시정**
 -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예천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읍면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지도를 하고,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에 청소계획 1개월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서를 발부하고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예천군 보안업무 요강」 제54조(보안교육)에 따르면 분임보안담당관(면장)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지며, 제57조(보안점검)에 따르면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 또한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지침」 제74조(단말기 보안)에 따르면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지며, CMOS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 사용하여야 하며,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중단할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
-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USB메모리 등 휴대용 보안관리지침」 제6조는 각급기관은 등록된 휴대용 저장매체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소속직원에게 공지·교육을 통하여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휴대용 저장매체를 무단 반출하거나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 또는 확인하는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감사기간 중 불시 점검 시 개인 캐비넷 및 책상 서랍 잠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무실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개인 캐비넷 및 책상 서랍의 시건장치 잠금 설정 등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지방세 제증명 발급절차 미준수 ⇒ 조치사항 : 주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 및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개인 및 단체 대리인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신청 시 증빙서류를 일부 누락하는 등 지방세 제증명 발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및 64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납입된 세입세출외현금(**건) 대하여 세입처리하지 않은사실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처리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도급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제출받고 위·변조 및 복사하여 중복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2024년 7월부터 2026. 7. 24.까지 기간동안 1천만원 이상 계약 관련하여 징구한 전자수입인지에 대하여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24년 7월부터 징구한 전자수입인지에 대해 소인처리 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신용카드 계좌관리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별표 4)을 준수하여야 하고,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 신용카드의 사용 회계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 | |
|---|
| <p>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 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 품의</p> <p>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 원인행위</p> <p>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 입금) ⇒ 지출</p> |
|---|

○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이용 대금을 입금 조치하고,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하여 통장 잔액이 지급될 금액과 일치하도록 신용카드 통장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연체료 발생 및 카드 결제금액 미지출건으로 인해 총 **,***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여야 하나 원인불명의 사유로 *,***원이 부족 하여 카드사 청구금액 대비 카드결제 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음

○ ***** 사업자 계좌로 지출된 **,***원 회수 및 원인 미상의 금액 -,***원을 조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조치사항 : 시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 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3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2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건)하였음에도 각각 차량 이용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과다지급된 교통비(***,***원)를 추징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교부업무 처리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I」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신속히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함.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 후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하여 폐기한 후 폐기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장기간 대상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며, 폐기 대상 여부에 대한 조치 및 폐기 정보 또한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 교부 미처리 내역을 시정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 조치사항 : 시정

- 「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에 따르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세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1항에 따라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제1항은 취득세는 차량, 이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제1항은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에 따라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수입인지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할 경우 위·변조 및 복사하여 중복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 처리를 하여야 함.
-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4조(전결사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민원사무처리 접수대장은 팀장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별표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수납확인 영수증 미첨부, 인지세 징구 및 인지 소인 누락, 내부결재 승인(팀장 전결) 없이 담당자 임의로 이륜자동차 민원 처리 등 이륜자동차 민원서류 처리에 소홀히(**건) 한 사실이 있음.

- 이륜자동차 등록내역의 부적정 사항을 시정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친환경 과실생산으로 과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수 생력화장비 보급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가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간(승용ss기, 다목적리프트기 5년 등)동안 보조사업자가 목적대로 농업기계를 관리·운영되는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음.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2024년 ~ 2026년 과수 생력화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후 관리대장 내 현장 사진대지 누락 및 농기계 제조번호 미기입 등(**건)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음.
- 관리카드를 정비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대장 이송 지연 처리 ⇒ 조치사항 : 주의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제1항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 증명청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건의 인감대장 이송 시 3일 이내에 신 증명청에 이송하지 않아 인감대장이송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 조치사항 : 주의

-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금 정산)제1항 따르면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 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증기 수입금을 정산하면서 **건의 수입금 납입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회수 주민등록증 인계 지연 ⇒ 조치사항 : 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사망, 재발급,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말에 결산하여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인계하고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에 확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를 하면서 **건의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1항에 따라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각 호의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는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서 접수 시 징수하고,수입증지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건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수수료 면제 사유 입증 없이 수수료를 미징수 및 증지를 미첨부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및 증지 미첨부 내역의 부적정한 사항을 시정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도로점용료 징수 소홀 ⇒ 조치사항 : 주의

- 「도로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점용료를 산정할 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건(**,***원)의 점용료 산정에 있어 도로부지의 ****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비 미정산 과다지급(***리 **** 배수로 설치공사) ⇒ 조치사항 : 시정

-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당초 계획한 시공 물량을 정량 시공하며, 시공과정 중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산 조치 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 **과 계약한 “***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현장하차도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반비를 반영하여 별도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공사비 미정산 과다지급(**리 ***** 배수로 설치공사) ⇒ 조치사항 : 시정

-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당초 계획한 시공 물량을 정량 시공하며, 시공과정 중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산 조치 하여야 함.
- 그런데 은풍면에서는 *** **과 계약한 “***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측구 수로관에 설치할 관급자재에 대한 별도의 정산없이 없이 준공 처리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4 모범 사례

은풍면 주민자치활동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 배움의 열의는 있지만, 은풍면 관내에 프로그램 제공이 없어 학습의 기회가 없었음
-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생성으로 은풍면민이 관내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학구열을 충족할 수 있는 강좌 개설이 필요한 실정임
-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풍면민을 위하여 문화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5 2. ~ 12.
- 대 상 : 은풍면민(현재 8개 동아리, 212명 운영중)
- 사업목적 :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개최로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 마련
- 사업내용 : 주민자치 동아리 운영 활성화 및 동아리발표회 행사 실시

추진현황

연번	연도	행사명	일시	참가인원	내용	비고
1	2025	은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동아리 발표회	12. 6.(토)	200명 정도 (동아리회원 및 주민)	동아리별 발표	
2	2024	은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동아리 발표회	11. 16.(토)	200명 (동아리회원 및 주민)	동아리별 발표(6팀)	

※ 특히 은풍노래교실(회원 40여명)은 예천군연예인협회에 소속되어 은풍면 찾아가는음악회 등 여러차례 공연으로 군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함

기대효과

- 주민자치 동아리 운영 지원 및 발표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문화 활성화 도모